

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13의2] <개정 2023. 12. 20.>

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 (제41조의2제3항 관련)

교육대상	교육과목	교육방법
<p>1. 철도종사자 (법 제44조의 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제외한다)</p>	<p>가.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나.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다.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라.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마.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바.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·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.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시스템(Safety Management System) 아.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</p>	<p>강의 및 실습</p>
<p>2. 위험물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 (법 제44조의 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를 말한다)</p>	<p>가.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교육과목 나. 위험물 취급 안전 교육</p>	<p>강의 및 실습</p>